



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

수신자 (주)바이오스페이스(대표;차기철) 귀하 (우135-854 서울 강남구
도곡2동 518-10)

(경유)

제목 신장계 및 체지방측정기의 계량인증 필요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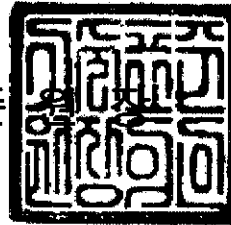
1. 귀 사의 지속적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귀 사 사장-10-02150(2010.08.26)호와 관련입니다.

3. 우리 원에서는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관련 [별표]9에 따라 형식
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의 종류에 대하여 18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4. 이에 따라, 신장계 및 체지방 측정기는 현행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
형식인증 대상 품목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기 술 표 준



공업연구관

임완빈

공업연구사

박용균

공업연구관

남하욱

과장

전결 09/09

박인수

협조자

시행 계량측정제도과-1260 (2010. 09. 09.) 접수

우 427-716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/ <http://www.mke.go.kr>

전화 02-509-7231 전송 02-509-7414 / wbin@ats.go.kr / 비공개(6)